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31 선고 2022가합101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유한진, 우종진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1.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45,623,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2. 22. 접수 제11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지원 2022. 2. 22. 접수 제115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04,023,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1)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D은 2014. 6. 23.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1. 12. 6. 사임하였고, 2022. 3. 4. 다시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3) E은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이전받고자 한 사람이고, F은 E의 딸이다. F은 2021. 12. 6.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2. 2. 4. 사임하였고, E은 2022. 2. 4.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2. 3. 4. 사임하였다.
-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주차장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의 사내이사 G은 E의 처남이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21. 11. 1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7억 원(7억 원 선납)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2. 1. 2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을 6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6억 5,000만 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58억 5,000만 원은 2022. 2. 22.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약정(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는 2022. 2. 22.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2022. 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22. 2. 22. 피고 B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제2약정은 원고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주차장을 처분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차장업이 양도·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피고 B는 F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제2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제2약정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65억 원 중 원고의 H조합에 대한 채무액 4,695,376,681원을 대신 변제하는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양도양수계약의 나머지 양수대금 1,804,023,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약정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2약정이 체결될 당시 F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주차장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 B와 통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허위로 이 사건 제2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가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약정이 원고와 피고 B와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21. 11. 11.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제1약정서가 먼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1인주주였던 D이 E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대신 이 사건 주차장을 E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E이 7억 원을 D에게 지급하자 E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② D은 2021. 10. 29. F 명의의 계좌에서 7억 원을 이체받았고, 그 무렵 F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D은 2021. 11.경 이 사건 주차장을 이전하는 방식을 매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세무법인에 검토를 맡겼고, 2021. 12. 13.에는 D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발행주식 40,500주(100%)를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였던 D은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차장을 E 또는 E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고의 발행주식을 모두 E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을 소유한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E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③ 피고 B는 2022. 1. 24. 주차장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B의 사내이사 G은 E의 처남인 사실, 이 사건 제1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2. 2. 2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2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비록 최초에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F에게 이전하는 방식은 아니나, E은 피고 B를 이 사건 주차장을 양수할 당사자로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이미 원고 발행주식 100%를

양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한 이후 그의 의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약정을 피고 B와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2022. 2. 22.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약정이 체결된 당일 원고가 H조합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4,638,85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D은 다시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22. 3.경 E,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65억에 매매한 이 사건 주차장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을가 제10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2약정이 진정하게 체결되어 그 효력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약정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차장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1)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손익계산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공사업 등의 영업이익은 -871,509,779원으로 적자이지만, 이 사건 주차장에서 영위한 주차장업의 영업이익은 225,336,458원이므로, 원고의 전체 영업이익 중 이 사건 주차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의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으로서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주차장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내지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이유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결여되어도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11403 판결 참조). 사실상

1인회사의 소유 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사결정은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52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의 발행주식 40,5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던 D은 2021. 12. 13. E에게 40,500주 전부를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26.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주차장을 65억 원에 매도하는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인 F이 이를 찬성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었고, E은 원고의 주주의 지위에서 위 안건의 가결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위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관해 원고는 2022. 1. 28.자 이 사건 제2약정의 체결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주주는 D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2022. 3.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1.경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E이 원고의 발행주식 40,500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차장의 매도 당시 E은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주주이고, 이 사건 주차장을 처분하기로 한 이사회회의 결의는 당시 E의 딸이자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F이 결정한 것이며, E이 위 이사회회의 결의에 동의한 이상 결국 이 사건 주차장의 매도는 1인주주이던 E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E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의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86조에 의하여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상 진술 또는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등기의 유·무효 여부는 법률 판단의 대상으로 소송당사자의 자백,

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 B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 B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제2약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이상 그 무효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라. 소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65억 원인 사실,<sup>2)</sup> 피고 B는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잔금일인 2022. 2. 22. 원고의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4,695,376,681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양도양수계약의 나머지 양수대금 1,804,023,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대금의 추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4,695,376,681원을 변제한 외에 2022. 12. 28. 원고에게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경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B가 2022. 1. 28. 계약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원고 명의 I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6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2분 뒤에 2억 8,000만 원이, 그로부터 2분 뒤에 3억 7,000만 원이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E의 처남인 G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위 계약금 상당액 6억 5,000만 원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F와 G(실제 자금주는 E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제1약정이 체결될 무렵부터 이 사건 제2약정이 체결된 2022. 1. 28.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계 13억 5,900만 원을 D 또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보낸 사람<br>(계좌명의주)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받은 사람 | 증거(호증) |
|------------------|------------|-------------|-------|--------|
| F                | 2021-10-29 | 700,000,000 | D     | 을가8    |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실제 매매대금은 매매대금 65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
|----|------------|---------------|--------|-----|
|    | 2021-11-29 | 170,000,000   | D      | 을가8 |
|    | 2021-12-03 | 50,000,000    | D      | 을가8 |
|    | 2021-12-29 | 13,500,000    | 주식회사 A | 을가6 |
|    | 2021-12-31 | 300,000,000   | 주식회사 A | 을가6 |
|    | 2021-01-24 | 70,000,000    | D      | 을가6 |
|    | 2022-01-25 | 5,500,000     | 주식회사 A | 을가6 |
| G  | 2021-09-17 | 50,000,000    | D      | 을가8 |
| 합계 |            | 1,359,000,000 |        |     |

4) 이와 같이 지급된 돈은 E이 원고의 기존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D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양수받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2약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먼저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급한 돈 합계 13억 5,900만 원을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5)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 65억 원에서 원고의 H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4,695,376,681원 및 위와 같이 지급한 13억 5,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445,623,319원(= 매매대금 6,500,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4,695,376,681원 - 공제 13,5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잔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2. 2. 23.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근찬, 판사 허유정, 판사 정성희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769.49㎡

2층 1915.63㎡

3층 1915.63㎡

4층 1917.1㎡

5층 1925.17㎡

6층 1926.09㎡

7층 1926.91㎡

8층 1927.74㎡

9층 1928.57㎡

지하1층 47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42.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2239.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2397000분의 304750

##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769.49㎡

2층 1915.63㎡

3층 1915.63㎡

4층 1917.1㎡

5층 1925.17㎡

6층 1926.09㎡

7층 1926.91㎡

8층 1927.74㎡

9층 1928.57㎡

지하1층 470.2㎡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912.28㎡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2239.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2397000분의 1957457

## 3.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769.49㎡

2층 1915.63㎡

3층 1915.63㎡

4층 1917.1㎡

5층 1925.17㎡

6층 1926.09㎡

7층 1926.91㎡

8층 1927.74㎡

9층 1928.57㎡

지하1층 470.2㎡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108.7㎡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2239.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2397000분의 2378911

## 4.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769.49㎡

2층 1915.63㎡

3층 1915.63㎡

4층 1917.1㎡

5층 1925.17㎡

6층 1926.09m'

7층 1926.91m'

8층 1927.74m'

9층 1928.57m'

지하1층 470.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107.59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2239.7m'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2397000분의 2376529

5.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769.49m'

2층 1915.63m'

3층 1915.63m'

4층 1917.1m'

5층 1925.17m'

6층 1926.09m'

7층 1926.91m'

8층 1927.74m'

9층 1928.57m'

지하1층 470.2m'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108.24㎡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2239.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2397000분의 2377924

## 6.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769.49㎡

2층 1915.63㎡

3층 1915.63㎡

4층 1917.1㎡

5층 1925.17㎡

6층 1926.09㎡

7층 1926.91㎡

8층 1927.74㎡

9층 1928.57㎡

지하1층 470.2㎡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8층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108.88㎡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2239.7m'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2397000분의 2379297

#### 7.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769.49m'

2층 1915.63m'

3층 1915.63m'

4층 1917.1m'

5층 1925.17m'

6층 1926.09m'

7층 1926.91m'

8층 1927.74m'

9층 1928.57m'

지하1층 470.2m'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9층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109.54m'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2239.7m'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2397000분의 2380704

1) 이 사건 소장 제 3, 4쪽 참조

2) 피고 B는 이 사건 주차장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55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약정서에서 매매대금을 65억 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B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E, F이 2022.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 65억 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확인서(을가 제10호증)를 받기도 한 점에